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

5.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: 한국가스안전공사

별표 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1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<삭 제>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 1. ~ 9. (생략) 10. <u>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</u> 11. ~ 13. (생략)	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 <삭 제>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</u> 1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,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</u>

⑤ · ⑥ (생 략)	<u>과의 공개: 한국가스안전공사</u>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가. (생 략)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<u>단서 신설</u>> 다. ~ 라. (생 략) 2. (생 략)	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<u>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